

법률요건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조건도 걸지 않는다.

-Victor Hugo-

머릿 이야기

수능 국어 법학 지문에서 계약과 함께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개념이다. 계약은 고교 과목인 '법과 정치'에서 다루고 있지만, 법률요건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에 대해 알아두면 유익할 것이다.

법률

용어¹⁾

'법률'은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헌법 다음의 위계를 지닌다. 그러나 '법률'에 다른 의미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에 대해 명확히 알고 가야 한다.

법률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의미를 지닌다.

Law

법의 일반적인 개념으로 사회를 규율하는 원칙과 규칙의 체계

Ex) 형법(Criminal law), 국제법(International law)

Legal

'법률과 관련된' 또는 '합법적인'

Ex) 법률요건(legally required factor for legal effect), 법률효과(legal effect), 법률상담(Legal advice)

Act(statute)²⁾

의회나 입법기관에서 제정된 특정 법률

Ex) 미국 최초의 수질보호법(The Federal Water Pollution Control Act of 1948)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법률'은 **Act(statute)**를 의미한다.

'법률요건', '법률효과'의 '법률'은 관형격 조사 '의'가 생략된 것으로, 'Legal'에 해당한다.

이때, 'Juristic'으로 써도 상관없다.³⁾

1) 법률에 대한 개별적인 번역을 공부하는 것보다 '법률'이 일반적으로 여러 방향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아두자.

2) * "statute"와 "act"는 상당 부분 비슷하게 사용되나, 영국법 체계에서는 "Act"라는 용어가 주로 특정한 의회제정법을 가리키는 반면, "statute"는 넓게 성문화된 모든 법률(Act를 포함한)을 지칭한다. 미국에서도 의회가 제정한 단일 법률 문서를 "Act"라 부르고, 제정된 개별 법률의 총합체나 특정 법률 조항들을 "statute"로 지칭한다..

3) 보통 이론적·학문적 분석에서 'Juristic'을 사용하고, 일상적·실무적으로 'Legal'을 사용하지만, 관련 사용례들에 비추어 보면 그 구별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요건

정의

- 1.긴요한(important) 일이나 안건
- 2.필요한 조건(Requirement, required factor)

법률요건', '법률효과'의 '요건'은 필요하다는 의미로 'Requirement, required factor'에 해당한다.

소결

따라서 '순수한 법률요건'은 법률과 관련된 필요한 조건이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과로서 어떠한 변화가 생긴다. 이때 그 효과를 '법률효과'라고 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민법과 형법에서 다른 느낌으로 나타난다.

민법의 법률요건(法律要件, Juristic requirement)

정의

- (1)민법에서
- (2)법률관계를
- (3)변동하게 만드는
- (4)원인

법률관계

실체법은 권리와 의무의 내용 및 발생, 변경, 소멸 등을 규정한 법이고, 이러한 법률관계가 실현되는 절차를 절차법이라고 합니다.

[고교 정치와 법 교과서]

인간의 생활관계는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그중에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관계를 법률관계라 한다. 법률관계는 법에 규정이 있거나 혹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써 형성된다.

[고교 법과 사회 교과서]⁴⁾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법률관계'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정의해주고 있다.

[1-3] 개인 간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로 '손해 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들 수 있다.

[23111013]

기출에서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따라서 법률관계의 정의는 인간의 생활 관계 중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관계이고 권리와 의무의 내용 및 발생, 변경, 소멸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법과 사회' 과목은 이전 고교 과정이라 현재 사회탐구 과목이 아니다.

분류

법률요건은 '당사자의 의사'와의 관련성(R)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것
2.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한 것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것 =법률행위(Juristic act)

법률요건 중에서도 의사표시를 본질로 하는 법률요건

이때 본질로 한다는 것은 의사표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해해도 좋다.

[2-1] 이처럼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라 한다.

[19111620]

계약(Contract)

두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눈 여겨 볼 것으로 '매매계약'과 '증여계약'이 있다.

매매 계약

[1-5] 한 예로 매매 계약은 '팔겠다'는 일방의 의사 표시와 '사겠다'는 상대방의 의사 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짐과 동시에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1-6]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1-7] 양 당사자는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19111620]

甲이 乙에게 담배를 구입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이때 甲과 乙이 각각 매수인, 매도인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甲: (문을 열고 들어가며) "안녕하쇼"

乙: 어서오세요.

甲: (카드를 내밀며) 말보로 레드 하나

乙: (담배를 꺼내 내밀며) 4500원입니다. 영수증 드릴까요?

甲: 됐수다. 많이 파쇼

"말보로 레드 하나"는 甲이 乙에게 담배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乙이 그 말을 듣고, 담배를 꺼낸 다음에 甲에게 준 것은 甲에게 담배를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이때 담배를 지급하는 급부에 있어서는 甲이 채권자, 乙이 채무자의 지위를 가지며, 돈을 지급하는 의무에 있어서는 甲이 채무자, 乙이 채권자의 지위를 가진다.

증여 계약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보기>....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

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증여자만 이행 의무를 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19110019]

甲이 乙에게 금 100,000원을 용돈으로 주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이때 甲과 乙은 각각 증여자와 수증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甲: “아들아 용돈 필요하면 말해라. 말하면 용돈 주마.”

乙: “용돈 필요합니다”

甲: (오만원 지폐를 2장 내밀며) “책 사봐라”

乙: “감사합니다”

아들에게 돈을 주면서 “말하면 용돈을 주겠다는”는 말은 甲이 乙에게 용돈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乙이 그 말을 듣고, “용돈 필요합니다”라고 대답한 것은 승낙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이때 甲만이 돈에 대한 이행의무를 지게 된다.

단독행위

한 명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눈 여겨 볼 것으로 ‘취소’와 ‘유언’이 있다.

1. 취소

취소해서 없던 것으로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성립한다.

이때 취소권이 있다면, 상대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

을 :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 유무 등을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대등한 주체 사이의 사법상(私法上)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목적, 취지 및 기능 등을 달리한다.

[140005LEET추리논증]

2. 유언

일정한 내용대로 상속관계를 생성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성립한다.

타인의 허락이 필요 없다.

<보기>...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유언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고 의사 표시의 상대방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증여와 차이가 있다.

[19110019]

범죄(Crime)과 형벌(Punishment)

국가가 형벌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를 법률로 정하게 되면, 그 행위를 **범죄**라고 하며, **형벌**은 이 범죄에 대한 공식적인 제재 수단이 된다.

[고교 법과 정치 교과서]

범죄는 법률이 규정한 처벌할 수 있는 행위이다. 이러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 형벌은 제재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복습) 법률요건과 법률효과

형법과 범죄의 관계를 아까 공부했던 법률요건과 법률효과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범죄가 성립해야, 형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이를 범죄의 성립요건이라 한다.

따라서 '순수한 법률요건'이 형법에서 '범죄의 성립요건'으로 나타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범죄의 성립요건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그 행위가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해야 하고(구성요건해당성), 그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부정적이라는 판단이 있어야 하며(위법성), 마지막으로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범죄로 인정되는데, 이를 범죄의 성립요건이라 한다.

[고교 법과 정치 교과서]

이러한 범죄의 성립요건은 3가지로 구성된다.

1. 구성요건해당성
2. 위법성
3. 책임

즉,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성립해야 '범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고, '형벌'이 발생한다.⁵⁾

활용

법률요건과 법률효과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다.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알아보자.

인과관계

법률요건과 법률효과는 일정한 인과관계로 묶여있다.

즉,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일정한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수능에서 이런 법률요건과 효과가 출제된 경우, 요건과 효과에 초점을 맞춰 읽는 것을 권장한다.

다음과 같은 사례를 보자.

5) 형법에서의 범죄이론은 추후 관련 지문(LEET)에서 중점적으로 언급하고 여기서는 가볍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다.

사례1

[2-1] 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 내용이 실현되지 못하여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그 액수만큼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2-2] 그러나 손해 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채권자는 손해 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 배상 예정액만큼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2-3] 이때 손해 액수가 얼마로 증명되든 손해 배상 예정액보다 더 받을 수는 없다.

[2-4] 한편 위약금이 위약벌임이 증명되면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고, 손해 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이때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하면 손해 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

[23111013]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의 변화이다.

요건과 효과에 초점을 맞춰 읽어보자.

[2-1] ^{요건1}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 내용이 실현되지 못하여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요건2}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요건3}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효과}그 액수만큼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23111013]

요건과 효과를 구별해서 독해하면 매우 쉽게 읽을 수 있다. 요건1, 2, 3이 모두 충족하면 효과가 나타난다.

다음 문장도 읽어보자.

[2-2] 그러나 ^{요건4}손해 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요건3}채권자는 손해 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효과}손해 배상 예정액만큼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조금 낮은 부분이 출제됐다. ^{요건4}손해 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 ^{~요건3}채권자의 손해 액수 증명이 없어도, ^{효과}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그러나’의 질감을 고려하면, [2-1]의 케이스는 손해 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문장도 읽어보자.

[2-3] 이때 손해 액수가 얼마로 증명되든 손해 배상 예정액보다 더 받을 수는 없다.

손해 액수에 대한 제한조건이다. 이러한 경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법학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법률요건과 법률효과를 머릿속으로 구별지어 읽는 것은 쉽지 않다.

수능에 출제되는 법학 소재는 Case 분류를 묻기 위해 출제되고,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실전에서 머리로만 글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때 기억하면 좋은 격언이 있다.

“머리가 나쁘면 써라”

저런 케이스 분류가 머리 아프다면, 쓰면 그만이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 조항에서 그 적용이 문제될 때,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를 메모하라는 것이다.

자 그러면 실전에서 메모를 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서 읽어보자.

[2-1] ^{요건1}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 내용이 실현되지 못하여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요건2}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요건3}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효과}그 액수만큼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23111013]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메모할 수 있다.⁶⁾

위반(채무자) ∧ 손해(채권자) ∧ 증명(액수) → 배상(액수)⁷⁾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읽어보자.

[2-2] 그러나 ^{요건4}손해 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요건3}채권자는 손해 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효과}손해 배상 예정액만큼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도 메모해보자.

위반(채무자) ∧ 손해(채권자) ∧ 증명(액수) → 배상(액수)
+if) Fix(손·배·예) X → 배상(손·배·예)

실전에서 필자는 모두 쓰기 귀찮아서 [2-1]에서 메모한 것에 더해서 ‘+if’를 사용했다. 또 ‘증명(액수)’ 부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부분은 그 밑에 ‘X’표시로 메모했다.

[2-3] 이때 손해 액수가 얼마로 증명되든 손해 배상 예정액보다 더 받을 수는 없다.

이 부분은 앞선 메모에 추가할 수 있다.

위반(채무자) ∧ 손해(채권자) ∧ 증명(액수) → 배상(액수)
+if) Fix(손·배·예) X → 배상(손·배·예)
+if) O → 배상(손·배·예)

[2-2]에서는 ‘손해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2-3]은 ‘손해액수’를 증명한 경우이다. 만약 ‘손해액수’가 ‘손해 배상 예정액’보다 많은 적든 ‘손해 배상 예정액’보다 더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손해 배상 예정액’을 배상받는다고 메모할 수 있다.

6) 메모는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즉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임의대로 하는 것이다. 여기서 예시로 사용한 메모 규칙을 따라할 필요는 없다. 그저, “아 요건이랑 효과를 나눠서 메모하면 되는구나”하고, 자신만의 메모 방법을 찾으면 된다.

7) 이때 ‘∧’는 ‘and’를 나타내는 논리기호이다. ‘∧’로 연결된 모든 조건이 충족해야 된다는 뜻이다.

이제 다음 부분을 읽어보자.

[2-4] 한편 위약금이 위약벌임이 증명되면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고, 손해 배상 예정 액과는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이때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하면 손해 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

[2-4]는 ‘한편’으로 위약금이 위약벌임이 증명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그 이전 내용은 모두 위약금이 손해배 상예정액인 경우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위반(채무자) ∧ 손해(채권자) ∧ 증명(액수) → 배상(액수)

+if) Fix(손·배·예) X → 배상(손·배·예)

+if) O → 배상(손·배·예)

위반(채무자) ∧ 손해(채권자) ∧ 증명(위약벌) → 배상(위약벌) ∧ ~감액

if) 증명(액수) → +배상(손해 배상금)

이렇게 메모를 하면 세 가지 이점이 있다.

1. 부족한 피지컬을 메모로 보충.
2. 메모 자체에서 깊은 독해가 가능
3. 메모 결과를 바탕으로 케이스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음.

다른 사례도 보자.

이젠 단계별로 설명해주지 않고 바로 들어간다.

사례2

[2-2]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르면,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그 결과의 보도는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금지된다.

[2-3] 「공직선거법」근거를 둔 ㉠「선거방송심의회에 관한 특별규정」은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의 왜곡 보도를 금지하고, 여론조사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에 이를 밝히지 않은 채로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도 금지하고 있다.

[2-4] 언론 단체의 ㉠「선거 여론조사보도준칙」은 표본 오차를 감안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보도하도록 요구한다.

[2-5]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경합”이라는 표현은 무방하지만 서열화하거나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라는 표현처럼 우열을 나타내어 보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24110407]

[2-2] ㉔「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르면,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그 결과의 보도는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금지된다.

㉔「공직선거법」의 규정

실시(여론조사) → 허가

보도(여론조사) → 금지

이때, 법률효과를 ‘허가’와 ‘금지’로 나눠서 메모했다. 허가와 금지는 법학 지문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니 알아두자
일반적으로 허가의 반대는 금지라고 볼 수 있다..⁸⁾

[2-3] 「공직선거법」근거를 둔 ㉕「선거방송심의회에 관한 특별규정」은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의 왜곡 보도를 금지하고, 여론조사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에 이를 밝히지 않은 채로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도 금지하고 있다.

㉕「선거방송심의회에 관한 특별규정」

사실(영향가능) ∧ 왜곡 → 금지

내(오차범위) ∧ ~공개 ∧ (서열∨우열) → 금지

역시 ‘금지’가 법률효과이고 화살표 앞 부분이 법률요건으로 볼 수 있다.

‘사실(영향가능)’, ‘왜곡’, ‘내(오차범위)’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금지’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금지’가 아닌 ‘허가’가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실을 왜곡보도 했지만, 그 사실이 유권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또 오차범위 내의 서열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해도, 그 사실을 공개했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다음 문장을 보자.

[2-4] 언론 단체의 ㉖「선거 여론조사보도준칙」은 표본 오차를 감안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보도하도록 요구한다.

[2-5]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경합”이라는 표현은 무방하지만 서열화하거나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라는 표현처럼 우열을 나타내어 보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㉖「선거 여론조사보도준칙」

내(오차범위) ∧ 경합 → 허가

내(오차범위) ∧ (서열∨우열) → 금지

8) 행정법총론에서 언급하는 ‘허가’와 ‘금지’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

사례3

[3-3] ㉠「공직선거법」의 선거 방송 토론회 규정은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또는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등을 초청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3-4] 다만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들을 위해 별도의 토론회 개최가 가능하고 시간이나 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24110407]

㉠「공직선거법」의 선거 방송 토론회 규정

후보자[정당(5인 ↑ ∨ 3% ↑)추천] ∨ 후보자(M5% ↑) → 초청

~[후보자[정당(5인 ↑ ∨ 3% ↑)추천] ∨ 후보자(M5% ↑)] → ~초청 ∧ (별도 토론회 or 시간·횟수 다르게)

이처럼 간단하게 메모할 수 있다.

결론

순수한 법률요건 개념은 법과 관련된 필요조건이다.

이 개념이 민사법, 형사법에서 다르게 현현한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실전에서 이것들을 메모하자.